

제 60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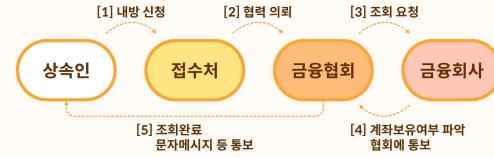
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

알아두면 편리합니다



상속인금융거래 조회서비스란?

금융협회·금융사 협조를 얻어 금융재산유무, 금융회사명, 잔액 등을 일괄 취합하여 제공하는 대국민서비스



각 금융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 가능
또는,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바로가기 를 통해 일괄조회 가능

- ① 상속인이 접수처에 내방하여 접수
- ② 금융협회가 금융회사에 조회 의뢰
- ③ 금융회사가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보유여부를 파악하여 협회에 통보
- ④ 금융협회는 일괄 취합하여 신청인에게 금융재산 유무, 금융회사명, 잔액 등 간략한 정보를 통지

1 상속인 조회서비스 관련 유의사항 1/5

금융회사의 계좌존재유무와 예금액·채무액을 통지합니다.

- 정확한 잔액, 거래내역 등 상세내역은 해당 금융사를 방문하여 별도 절차를 거쳐 확인해야 합니다.

2 상속인 조회서비스 관련 유의사항 2/5

접수일로부터 3개월만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합니다.

- 접수증에 기재된 접수번호는 각 협회 홈페이지에서 조회결과 확인 과정에 필요하므로 반드시 기억하시 바랍니다.
- 한편,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페이지에서도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일괄 조회가 가능합니다.



3 상속인 조회서비스 관련 유의사항 3/5

사망자의 계좌에 거래정지 조치가 취해집니다.

- 해당 계좌의 입·출금(자동이체포함) 등이 제한될 수 있으며, 이후의 예금지급 등은 원칙적으로 상속인 전원의 청구에 의하여 해당 금융기관에서만 지급이 가능합니다.

4 상속인 조회서비스 관련 유의사항 4/5

조회 결과 통보 시기는 금융협회 별로 다릅니다.

- 각 금융협회별 예상소요기간(통상 20일)이 경과한 후에도 조회완료사실이 통보되지 않으면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협회에 유선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.

5 상속인 조회서비스 관련 유의사항 5/5

상조업체는 은행에 예치 보전 업체만 조회대상입니다.

- 상조가입여부는 선수금을 은행에 예치(또는 지급보증)하여 보전하고 있는 업체만 조회 대상입니다.
- 신청서상의 피상속인의 성명, 생년월일, 휴대폰번호 3개 정보가 상조회사 가입시 제출한 정보와 모두 일치하는 경우에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.